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2024. 6.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목 차

1. 윤리헌장 1

2. 윤리강령 2

윤 리 헌 장

(Charter of Ethics)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어르신들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경영 활동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조성합니다.

우리의 윤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존중: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합니다.

법과 규정 준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모든 경영활동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윤리강령

(Code of Ethics)

2024. 6.

노원어르신행복주회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 현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가치 판단기준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과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회사와 회사의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하며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기본자세)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해가 갈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취득하고 정직하게 기록하며, 중요한 정보는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

제5조(상호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바르지 못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은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아니한다.

③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현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임직원은 서로 간에 성적 유혹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이해충돌 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위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 안 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8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라는 인식하에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행복 및 안전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9조(고객만족)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의견과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제10조(고객의 이익보호)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과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1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2조(공정경제) ① 임직원은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한다.

② 임직원은 거래업체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

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합리적인 조건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13조(동반성장 노력 강화) 회사는 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4조(인격 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5조(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교육·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② 회사는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

제16조(인재육성)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 인재로 육성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17조(삶의 질 향상) ① 회사는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성취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상호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노사간 격의 없는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고충을 해소한다.

③ 회사는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여 조직 내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8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

동을 적극 수행한다.

제19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련한 법규와 제반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20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법규와 제반 기준을 준수하고, 환경보호·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21조(국제규범 준수) ① 임직원은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함에 있어 국제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한다.

② 임직원은 현지국의 문화·인종·관습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윤리강령의 운영) 이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윤리경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두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
- 윤리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과 개정 심의
-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임직원의 실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윤리경영의 운영과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